

6-26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 대학원혁신사업 운영 규정

2021.01.13. 제정

2024. 5. 31. 개정

주무부서 : 대학원 대학원연구기획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 대학원혁신사업(이하 ‘대학원 혁신사업’ 이라 한다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원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대학원혁신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·외 위원 1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연구부총장이 맡는다. <개정 2022.02.24., 2024. 5. 31.>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원혁신사업의 대학원 혁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혁신계획의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
3. 대학원 혁신계획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혁신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대학원혁신사업 운영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사업 혁신과제 단위의 계획, 실행 등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검토·자문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BK21사업 교육연구단(팀)장 등 교내 위원 21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맡는다. <개정 2024. 5. 31.>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대학원 혁신계획의 혁신과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 혁신계획의 주요 변경에 관한 자문
3. 대학원 혁신계획의 예·결산에 관한 자문
4.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대학원혁신사업 성과관리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사업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사업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‘성과관리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·외 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맡는다. <개정 2022.02.24., 2024. 5. 31.>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 수행관리 및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문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⑤ 성과관리위원회는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⑥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관리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원혁신사업 사업비관리위원회(이하 ‘사업비관리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업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 연구부원장으로 하고, 대학원 교육부원장, 대학원연구기획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예산, 회계, 감사, 총무 등 실무 팀장을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③ 사업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에 부합한 통제 및 관리
2. 연차별 사업비 결산
3.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의2(대학원혁신사업 연구과제심의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사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교과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사업 연구과제심의위원회(이하 ‘연구과제심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·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

원장은 대학원장이 맡는다.

③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과제 및 교과목 등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과제 및 교과목 등의 개발 결과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4. 5. 31.]

제6조의3(대학원혁신사업 비교과운영위원회) ① 대학원혁신사업에서 수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, 질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혁신사업 비교과운영위원회(이하 ‘비교과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비교과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 위원 8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원 연구부원장이 맡는다. 당연직 위원은 대학원연구기획팀장, 교육혁신지원팀장, LINC3.0사업운영팀장으로 하며, 실무위원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의 실무 직원을 위촉한다.

③ 비교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대학원생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체계 구축 및 대학원생 전문성 개발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, 개발, 실행 등 주요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
3.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 방식 표준화, 성과관리, 정기적 결과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4. 5. 31.]

제7조(회의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은 당 위원이 추천하는 대리인에게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,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⑤ 외부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사업비 관리

제8조(사업비 계정)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업비의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·관리하며, 대학원혁신지원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비 집행 및 이월) ① 모든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집행은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,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. 다만,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

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대학원혁신지원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% 이내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.

④ 당해 연도 대학원혁신사업이 종료된 경우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학원혁신지원비 집행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) ① 대학원혁신지원비의 법인클린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(마일리지, 누적 포인트)은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반납해야 한다.

② 대학원혁신지원비의 예금이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의 대학원혁신지원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마지막 차년도 사업비 잔액에 의한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한다.

③ 대학원혁신사업으로 발생한 과실(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본 대학에 귀속하여 대학원혁신지원비에 산입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1조(준용) 대학원혁신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의 ‘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’, ‘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’ 과 본교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2.24.>

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5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